
2016 송의여자대학교 자체평가 보고서

2017. 2. 23



송의여자대학교
SOONGEUI WOMEN'S COL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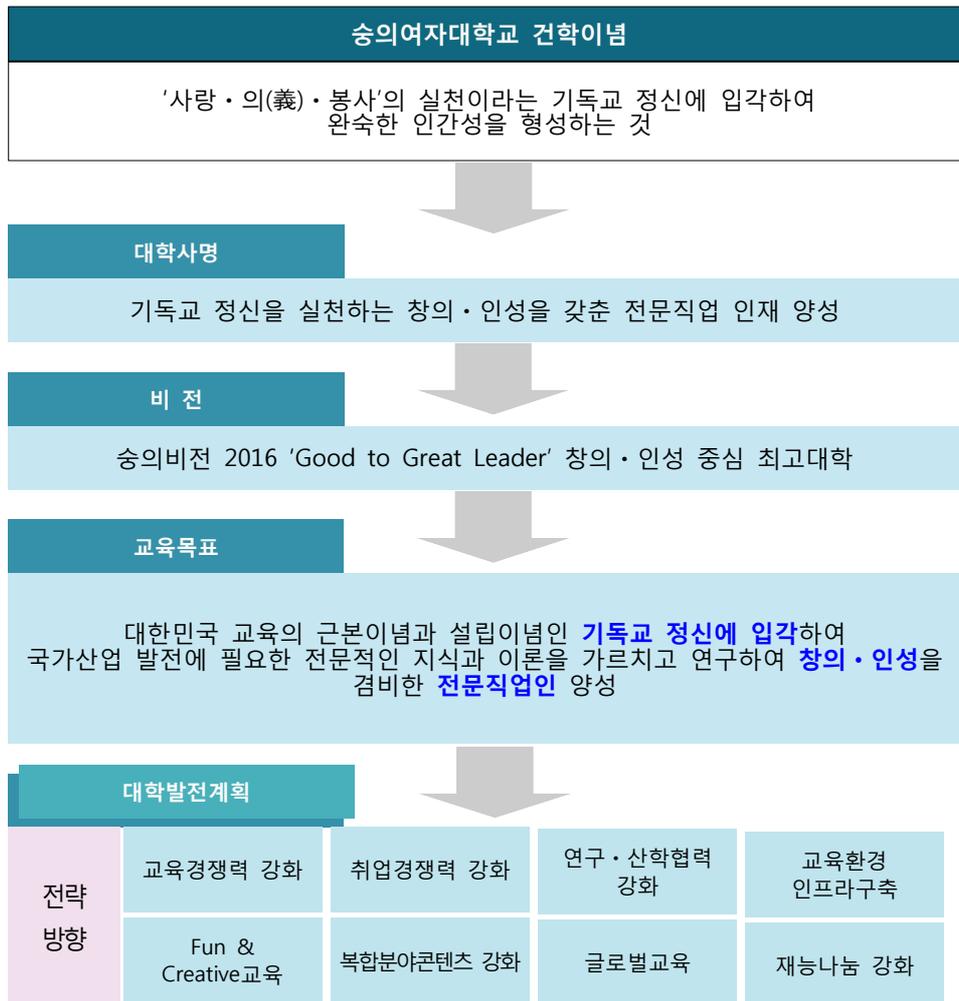
목 차

I. 사명 및 비전	3
II. 자체평가	7
1. 개요	7
2. 추진체계	7
3. 자체평가의 내용	10
4. 자체평가의 방법	12
5. 자체평가의 절차	12
III. 세부평가	13
1.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13
2. 교육과정	18
3. 학사관리 및 교육성과	26
4. 산학협력	35
5. 학생 및 도서관	41
6. 교원	49
7. 경영 및 재정	55
8. 물적·기술적 자원	65
9.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73

I. 사명 및 비전

□ 대학 설립이념

- 대학은 1903년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된 마포 삼열 목사에 의해 그리스도의 ‘사랑, 의(義), 봉사의 실천’이라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함.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완숙한 인간성을 형성하는 것이 설립 이념임. 신사참배 거부로 자진 폐교하였다가 1953년 재단법인 송의학원으로 다시 설립인가를 받아 송의의 정신을 계승하며 발전해 왔으며, 2018년까지 ‘창의·인성 중심 최고 대학’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학은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고등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에 부합하고자 창의·인성을 갖춘 전문직업 인재 양성을 위해 인성교육, 창의교육, 직업교육, 나눔교육을 교육목표로 설정함



[건학이념과 특성화 및 대학발전계획 연계성]

□ 대학의 비전

- 대학의 건학이념과 사명을 핵심적으로 압축하고 구체적 지향을 도출하기 위해 대학의 비전을 선정함.
- 대학의 비전은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 변화를 선도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함.
- 이에 대학의 새로운 비전을 '창의·인성 중심 최고 대학'으로 정하고 슬로건을 'Vision 2018 Good to Great Leader'로 표방함.

□ 대학의 교육목표

- 대학의 건학이념을 반영하고 사명(인재상)과 교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함.

학칙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여 창의·인성을 겸비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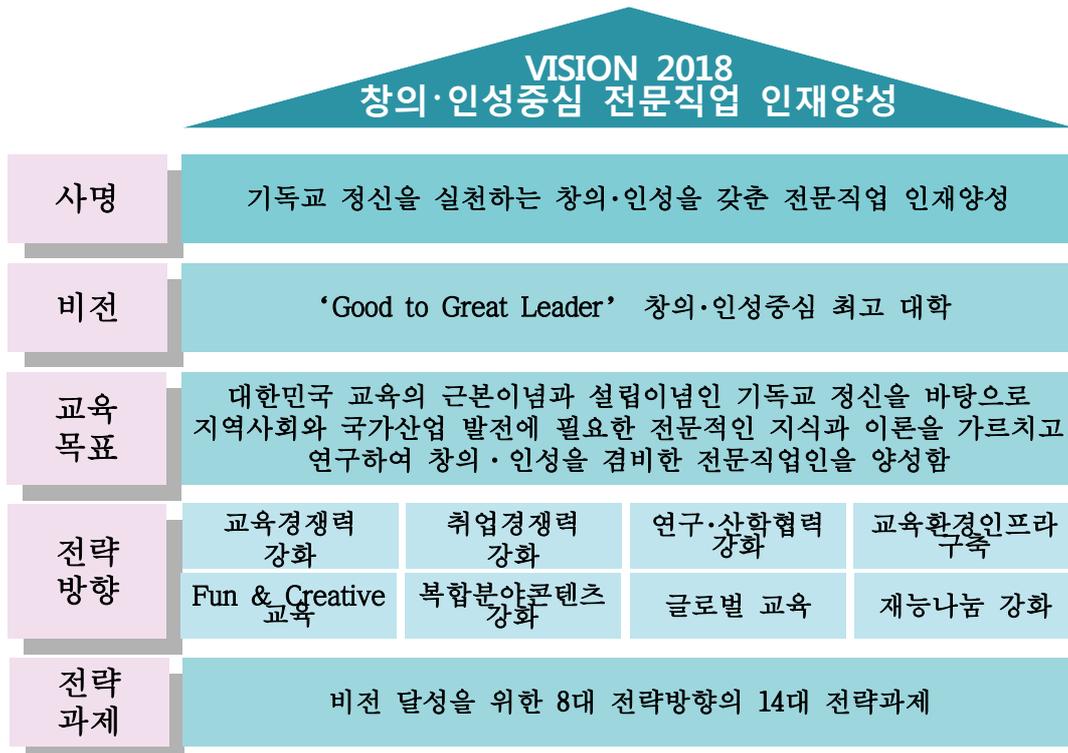
- 대학의 세부 교육목표는 신의에 기반한 인성교육, 잠재력을 배양하는 창의교육, 전문성을 갖춘 직업교육,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교육으로 구체화함.
- 대학의 교육목표는 기술 중심의 직업교육 차원을 넘어 전문성의 전제 조건인 인성 및 창의교육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음. 또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기여를 강조하여 공동체 정신을 반영함.



[대학교육목표의 세부개념]

□ 대학의 비전 체계도

- 대학의 사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8대 전략방향, 14대 발전과제를 설정함.



[대학 비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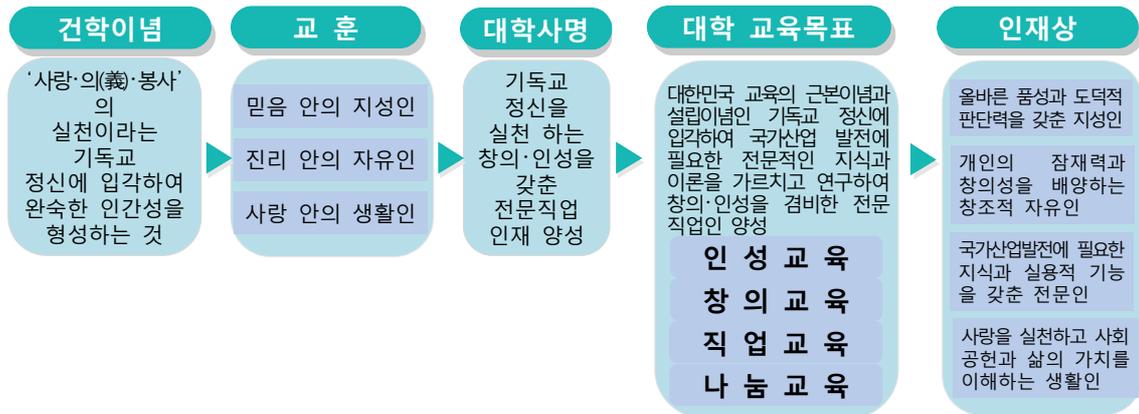
- 대학 8대 전략방향은 14대 전략과제로 세분화하여 추진함.



[전략방향별 전략과제]

□ 대학의 인재상

○ 대학은 건학이념과 교훈, 사명을 기초로 대학이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정립함.



[대학 건학이념 및 인재상을 반영한 교육목표]

Ⅱ . 자체평가

1. 개 요

□ 자체평가의 목적

- 대학의 교육목표 및 비전의 달성 정도를 자체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대학 운영체제 구축과 지속적인 교육품질 향상을 통하여 대학사명을 실현하고자 함.
- 자체평가 결과의 공개 및 공유로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대학의 자기혁신과 체질개선을 통한 대학 교육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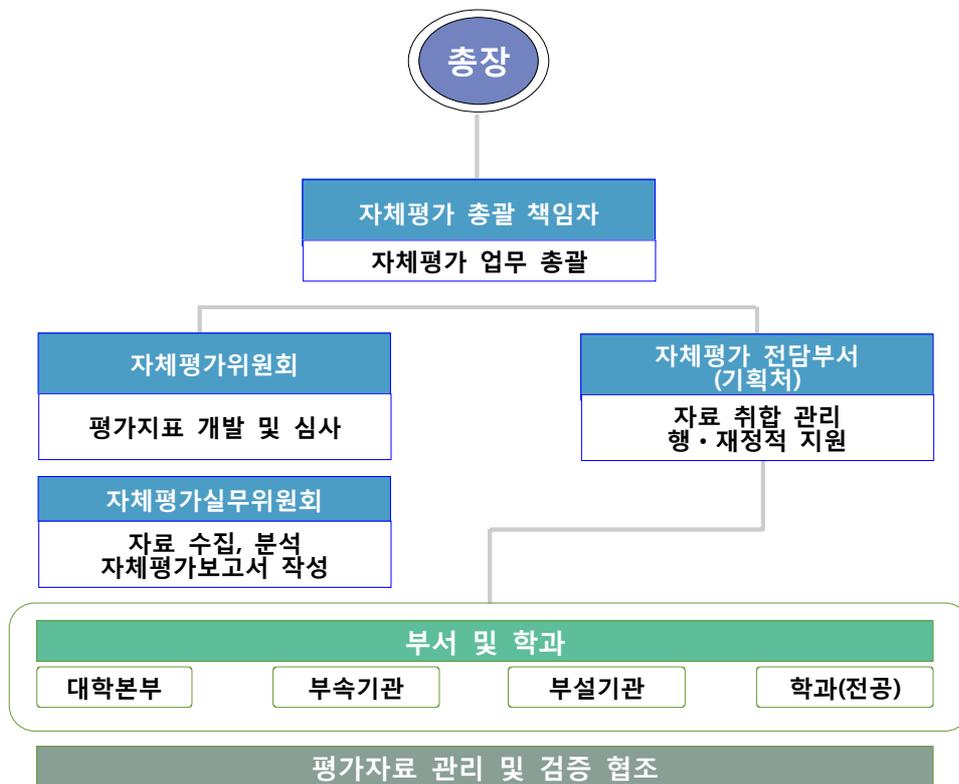
□ 자체평가 필요성

-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대학의 생존을 위한 경쟁력을 진단하고 점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됨.
- 대학의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산업체, 지역사회 등에 대학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함.

2. 추진체계

□ 조직도

- 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기획처를 추진부서로 두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체평가실무위원회와 평가심의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함.



[그림 II-1] 자체평가 조직 구성도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체평가 계획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 총장 직속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함.

<표 II-1> 자체평가위원회 현황 및 업무분장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요업무	비고
평가위원	위원장	기획처	처장 정재은	· 자체평가 총괄	
	위원	교무처	처장 윤현정	· 평가지표 관리 및 지도 · 자체평가 / 심의 · 교육품질 개선 지도	
		학생처	처장 손화희		
		총무처	처장 성광현		
		교수학습센터	센터장 김현석		
		NCS지원센터	센터장 김봉선		

- 평가자료를 취합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무위원회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지도 및 검토를 위한 책임실무위원회를 구성함.

〈표 1-2〉 자체평가실무위원회 구성현황 및 업무분장

구분	소속	성명	주요업무	비고	
총괄팀장	경영과	이재식	·평가실무 총괄		
기준별 팀장	경영과	정길채	·기준별 회의 주관 ·기준별 체크리스트 관리 ·보고서 작성지도 및 검토 ·증빙자료 정리지도		
	시각디자인전공	윤성준			
	패션디자인전공	박가영			
	디지털미디어전공	윤선희			
연구위원	기준 1,7,9	비서행정과	문주영	·평가자료 분석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증빙자료 검토	교원
		관광과	장양례		
		식품영양과	최정화		
	기준 2,3,6	주얼리디자인전공	신희경		
		세무회계과	최동춘		
		유아교육과	이영미		
		시각디자인전공	김도희		
	기준 4,5,8	문헌정보과	백지원		
		가족복지과	김시우		
		영상콘텐츠전공	조현일		
		공연콘텐츠전공	배인경		
		식품영양과	정혜연		
		패션디자인전공	한연희		
	가족복지과	유경숙			
실무위원	기준 1,7,9	기획처	이규상	·평가자료 작성 ·증빙자료 정리	직원
		총무처	정지열		
		총무처	최종현		
		기획처	이은식		
	기준 2,3,6	교무처	박석암		
		교무처	박애령		
		학생처	홍성표		
		학생처	김미혜		
	4,5,8	전산지원센터	유상기		
		총무처	박봉화		
		총무처	김갑성		
		학술정보센터	노승호		

3. 자체평가의 내용

□ 2주기 기관평가인증 평가기준 적용

-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대학 자체평가의 평가인정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요소는 2주기 평가기준에 맞춰 9개 기준, 25개 세부기준, 62개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3〉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내용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	평가방법
1.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1.1 사명과 교육목표	1.1.1 대학의 사명	정성
		1.1.2 대학의 교육목표	정성
	1.2 특성화 및 발전계획	1.2.1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수립	정성
		1.2.2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평가	정성
2. 교육	2.1 교육과정	2.1.1 교육과정 정책	정성
		2.1.2 교육과정 개발	정성
	2.2 전공 및 교양 교육	2.2.1 현장중심 전공교육	정량적정성
		2.2.2 직업기초 교양 및 기초학습 교육	정성
	2.3 평생교육	2.3.1 평생교육 운영 체제	정성
		2.3.2 학점인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리	정성
3. 학사관리 및 교육 성과	3.1 학사관리	3.1.1 학사관리 규정 및 준수	정성
		3.1.2 수업관리	정성
		3.1.3 학생선발	정량적정성
		3.1.4 학업 성취도 평가	정량적정성
	3.2 교육성과	3.2.1 졸업생 취업률	정량적정성
		3.2.2 교육만족도	정성
		3.2.3 재학생 충원률	정량적정성
	3.3 교수학습 지원	3.3.1 교수학습 지원 체제	정성
		3.3.2 교수학습 지원활동 평가 및 개선	정성
	4. 산학협력	4.1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산학협력활동 지원체제
4.1.2 산학협력활동 평가 및 개선			정성
4.2 취·창업지원 활동		4.2.1 취·창업지원체제	정성
		4.2.2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계획과 평가	정성
4.3 현장실습		4.3.1 현장실습교육 지원체제	정량적정성
		4.3.2 현장실습교육 평가 및 개선	정성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	평가방법
5. 학생 및 도서관	5.1 학생지원 및 상담	5.1.1 학생지원 체제 및 안전관리	정성
		5.1.2 학생자치활동	정성
		5.1.3 언론활동의 보장	정성
		5.1.4 상담 및 대학생활 정보 제공	정성
	5.2 학생복지 지원	5.2.1 복지 지원	정량적정성
		5.2.2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 지원	정성
	5.3 도서관	5.3.1 도서관 지원 체제	정량적정성
		5.3.2 도서관 지원 평가 및 개선	정성
6. 교원	6.1 교원의 선발과 평가	6.1.1 교원 임면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성
		6.1.2 교원의 확보	정량적정성
		6.1.3 교원평가	정성
		6.1.4 비전임 교원의 적합성	정성
	6.2 교원의 활동	6.2.1 교원 역량 계발	정성
		6.2.2 교육활동	정량적정성
		6.2.3 연구	정량적정성
	7. 경영 및 재정	7.1 리더십과 행정관리	7.1.1 대학의 조직과 운영
7.1.2 총장의 리더십			정성
7.1.3 의사결정구조			정성
7.2 인사 및 복지		7.2.1 직원 인사관리	정성
		7.2.2 교원 및 직원의 처우 및 복지	정량적정성
7.3 재정계획과 운영관리		7.3.1 장단기 재정운영계획	정성
		7.3.2 연간 예산계획 수립 및 결산	정성
		7.3.3 재정자원의 다양성	정성
7.4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7.4.1 교육비의 환원	정량적정성
		7.4.2 재정운영의 적절성	정성
	7.4.3 감사제도	정성	
8. 물적·기술적 자원	8.1 물적자원 계획과 평가	8.1.1 물적자원 계획	정성
		8.1.2 물적자원 평가 및 개선	정성
	8.2 교육 및 지원시설	8.2.1 교육 및 복지시설의 확보 및 유지	정량적정성
		8.2.2 정보전산시스템 지원 및 운영	정성
		8.2.3 정보보안 체계	정성
	8.3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	8.3.1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	정량적정성
8.3.2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관리		정성	
9.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9.1 대학의 책무	9.1.1 대학의 윤리적 책무	정성
		9.1.2 대학의 사회적 책무	정성
	9.2 교육품질의 지속적 개선	9.2.1 교육품질의 평가체제	정성
		9.2.2 교육품질의 평가 및 개선	정성

4. 자체평가의 방법

□ 자체평가 방법

-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자체평가 시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2016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편람에서 제시한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 및 주요 판단사항을 토대로 대학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함.
- 기관평가인증 평가요소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제시한 총족, 보완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작성함.
- 정성평가 요소는 정확성, 객관성, 타당성 및 현실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설명과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정량평가 요소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공시자료,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대학의 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보고서는 근거자료를 확인 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보고서의 완성도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5. 자체평가의 절차

□ 자체평가 추진절차

- 대학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편람을 기준으로 자체평가 추진계획 및 지표를 수립하였고 ALO를 중심으로 기획처에서 평가업무를 총괄 진행하였음.
-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부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요소별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체평가위원회는 보고서와 입증자료의 적절성을 검토 후 평가요소에 대한 총족 및 미총족 여부의 판단을 평가함.

Ⅲ. 세부평가

기준 1 :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1.1 사명과 교육 목표

1.1.1 대학의 사명

대학의 사명은 대학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대학의 특성 및 교육방향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1.1.(1) 대학은 대학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사명을 공표하고 구성원과 공유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건학이념, 교육이념을 토대로 구성원들과 함께 사명과 비전, 교육목표, 추진전략을 상호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어 수립하였으며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명 선포식을 실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학의 사명, 비전, 교육목표를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대·내외 교육수요자들에게 이를 인지하도록 하고 있음.

1.1.1.(2) 대학은 사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사명은 대학평의원회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갖춰져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까지 변경 된 사실이 없음.
- 대학은 사명의 변경 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학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음.

1.1.2 대학의 교육 목표

대학의 교육목표는 대학의 사명과 부합하며 대학이 양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인재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육목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출하고 있으며,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관리 지표를 설정하여 달성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개선하고, 그 결과를 구성원에게 공유시키고 있다.

1.1.2.(1) 대학은 구체적인 인재상을 담은 교육목표를 수립하여 공표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교육목표는 건학이념, 사명, 비전과 연계성 및 일관성을 갖고 수립하였으며 사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교육목표에 구체적인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학 홈페이지, 홍보자료, 게시물을 통해 공유하고 있음.

1.1.2.(2) 대학은 교육목표 수립 또는 변경 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승인을 받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교육목표 수립 시는 대학평의위원회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갖춰져 시행되고 있으며 변경 시 관련 승인 절차에 따라 시행함.
- 대학은 교육목표 변경 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학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음.

1.1.2.(3)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관리지표를 설정하고 달성 수준을 검토 개선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환류 하는 성과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음.
- 대학은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획처를 중심으로 행정부서 및 학과의 핵심지표를 점검하고 이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함.

1.2 특성화 및 발전계획

1.2.1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수립

대학의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외부환경 변화 및 대학 구성원의 요구분석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행정조직과 각 학과 간 구체적이고 추진 가능한 비전과 연차별 실천전략과 목표를 갖추어 이 행되고 있어 대학의 지속적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2.1.(1)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현가능한 비전과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특성화 및 발전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고, 연도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 비전과 사명을 구현하기 위한 8대 전략방향을 설정하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14대 전략과제를 구체화 하여 시행하고 있음.

1.2.1.(2) 대학의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은 추진 사업별 재정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발전계획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특성화 및 발전계획에 연계하여 교육환경 및 사회요구를 반영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1.2.1.(3) 대학의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수립 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법인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행하고 있음.

1.2.1.(4) 대학의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은 외부환경 분석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고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외부환경 분석과 내·외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유하여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함.

1.2.2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평가

대학은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운영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 이행 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1.2.2.(1) 대학은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각 부서별 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평가결과

-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학과 및 부서별 운영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교무위원회는 분석된 성과 모니터링 결과와 핵심 평가지표를 심의하고, 최종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차년도 행정부서 및 학과(전공)의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평가체제를 갖추고 실행하고 있음.

1.2.2.(2) 대학은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 평가체제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평가 시스템에 입각하여 매년 부서 및 학과의 사업 및 운영계획에 대해 년차별 성과지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 환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1.2.2.(3) 평가결과는 전 구성원에게 공유되고 발전계획 추진 및 교육운영 전반에 반영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각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교무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전체 구성원과 공유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차년도 부서 및 학과 운영 전반에 반영하고 있음.

기준 2 : 교육과정

2.1 교육과정의 질 보장

2.1.1 교육과정 정책

대학은 각 학과가 산업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대학이 설정한 인재양성 목표를 달성하며, 학위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혁신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운영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여 적용한다.

2.1.1(1)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산업체 요구수준과 학위 수준을 충족하는 교육품질 보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정책을 갖추고 공유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산업체 요구수준과 학위 수준을 충족하는 교육품질 보장하기 위한 교육과정 수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갖추고 있음.
- 대학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정규교과 외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2.1.1(2)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정책을 학과별(프로그램별) 교육운영에 적절히 적용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정책이 학과(전공)별 교육운영에 적용되도록 '교육과정편성및운영지침'과 '교육과정개발및운영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수립·운영하고 있음

2.1.1(3) 학과의 교육목표는 대학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가?

▣ 평가결과

- 학과별 교육목표는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수립하였고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음.

2.1.1(4) 학과의 개설, 통폐합이나 폐지 등은 정해진 정책과 규정(혹은 지침)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과의 신설, 폐지, 통폐합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2019학년도 학과 정원조정 작업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2.1.2 교육과정 개발

대학의 교육과정은 산업체 요구수준 및 학위수준에 부합하도록 교육수혜자(산업체, 학생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발 또는 변경하며,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2.1.2.(1) 학과별 교육과정의 개발과 변경은 정해진 정책과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칙과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산학협동위원회, 학과(전공)의 교육과정개발및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교육과정 개발, 수립 및 운영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1.2.(2) 교육과정 개발 또는 변경 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학과, 전공별로 산업환경 변화와 수요자 요구도 조사(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함.

2.1.2.(3) 교육과정 개발 또는 변경 시 교육과정개발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NCS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산학협동위원회, 학과(전공)의 교육과정개발및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교무위원회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2.1.2.(4) 학과의 교육과정 변경(일부 수정)은 적절한 효과성 평가를 거쳐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 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과별 교육과정 운영결과 평가 및 NCS 자체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개편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차기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함.
- 외부 전문가(SME)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무분석을 하고 교과목을 도출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함.

2.1.2.(5) 대학은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모든 학과(전공)의 교육과정 개발에 교육과정개발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음.

2.2 전공 및 교양 교육

2.2.1 현장중심 전공교육

전공교육은 학위수준 및 산업체 현장의 요구수준에 맞추어 학생이 달성해야 할 교육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습 및 이론 교과목의 편성·과목별 학습목표(지식, 기술, 성취수준 등)·교육운영 및 평가방법, 강좌 당 학생 수 등을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연계시켜 운영하고 있다.

2.2.1.(1) 학과는 교육목표 및 학습 성취수준 달성을 위하여 전공교과(실습 및 이론)를 적절히 편성하여 운영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의 비율을 '교육과정편성및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실습과목 개설은 50%이내로 하고 실습위주의 교과목 배정이 많은 과(전공)에서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2.1.(2) 각 학과(전공)은 학생이 달성해야 할 학습목표 및 성취수준(지식 및 기술 수준)을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공지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이 학과 인재양성 목표에 근거하여 학생이 달성해야 할 학습목표 및 성취수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과 홈페이지, 교육과정개편보고서, 강의계획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공지하고 있음.

2.2.1.(3) 각 교과별 강의계획서는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성취 수준(지식 및 기술), 평가방법, 교수학습방법 등을 포함하고,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공지되어 이행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과(전공)의 교육목표와 각 교과목의 교과목표, 성취목표, 평가방법 등을 강의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대학은 학습목표 및 성취수준이 제시된 교육과정을 학과 홈페이지, 전공교과목 프로파일, 강의계획서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공지하고 있음.

2.2.1.(4) 전공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는 적절한가?

▣ 평가결과

- 대학의 전공강좌당 학생 수는 인증원이 제시한 학기당 전공교과목의 강좌당 학생수 평균 33명 이하를 충족함.

2.2.2 직업기초 및 기초학습 교육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교양, 직업기초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직업기초 교양교육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갖추어 실천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학습성취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적절히 지원하고 있다.

2.2.2.(1) 대학은 학생의 인성과 교양 함양을 위하여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양교육운영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교양교육 정책 및 개설 교과목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인성과 교양 함양을 위해 기독교와문화, 사회봉사 등의 교양과목을 매학기에 개설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교양교육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산학협동위원회, 학과(전공)의 교육과정개발및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교무위원회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2.2.2.(2) 대학은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향상 교육을 적절히 제공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생의 직업기초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정책 및 체제를 구축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대학은 NCS 교육과정에 기반한 의사소통능력, 정보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2.2.2.(3) 대학은 학위 수준에 맞는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습능력 향상교육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학습센터를 중심으로 각 부서 및 학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상 학생들의 수준진단을 통해 국어, 외국어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음.
- 기초능력 테스트 실시 후 기준 미달자에 한하여 '사제톡톡' 프로그램 등으로 국어능력과 영어능력 향상 교육을 진행함.

2.2.2.(4) 교양강좌의 개설, 폐지 등은 정해진 절차(규정이나 지침)와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양강좌의 개설, 폐지 등을 시행하고 있음.

2.3 평생교육

2.3.1 평생교육 운영 체제

대학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학사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프로그램개발과 평가에 관련 학과나 전공분야 전임교수를 참여 시키고 있다.

2.3.1.(1) 대학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행정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원을 부설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담인력 배치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2.3.1.(2) 전담 부서나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평생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라 전담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2.3.1.(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 교육 등에 관련 학과나 전공분야의 전임교원을 참여시키고 있는가?

▣ 평가결과

-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개발, 평가, 교육 등의 과정에 전공 분야의 전임교수가 적절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5인 이상의 강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전공분야의 전임교수를 책임교수로 위촉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2.3.1.(4)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매년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의 자체평가와 교육프로그램별 강의평가 및 학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년도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2.3.2 학점인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리

대학은 학점인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정규 학위과정과 동등한 교육의 질과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2.3.2.(1) 학점인정 평생교육 프로그램(원격교육 포함)의 경우 정규 학위과정과 동등한 교육의 질과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평생교육원의 학점인정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정규학위과정과 동등한 교육의 질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공 분야의 전임교수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전공분야의 전임교수와 타 대학 학사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기준 3 : 학사관리 및 교육성과

3.1 학사관리

3.1.1 학사관리 규정 및 준수

대학은 학생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정·폐지 및 학생의 학적변동 등 재학 중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서의 학점인정, 성적평가, 학위수여 등 학사전반에 대한 학사관리규정을 갖추어 이를 준수하며, 관련 규정을 학생 및 교원에게 적절하게 공지하고 안내함으로써 학생의 학업활동을 지원한다.

3.1.1.(1) 대학은 학위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의 질과 수준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제반 규정(학사관리규정)을 갖추어 이를 공지하여 안내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위 수준에 적합한 학생 및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학사관리와 관련된 학칙 및 시행세칙을 갖추고 있음.
- 대학은 학사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자료인 대학생활안내에 공개하고 학사일정 및 주요 내용을 대학 홈페이지와 학과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있음.

3.1.1.(2) 학사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히 공지되고 안내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사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칙의 개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상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개정된 학칙은 총장이 공표함.
- 대학은 학사관리 관련 규정을 규정집으로 제작하여 행정부서 및 학과에 배부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유하고 있음.

3.1.2 수업관리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 그리고 학위수준에 맞는 교육활동 및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수의 수업활동 및 학생의 수업 참여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수업관리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여 교수 및 학생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3.1.2.(1) 학생의 출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평가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이수시간, 휴업일 등에 대해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에 명시하여 출결관리를 엄정하게 하고 있음.

3.1.2.(2) 수업운영(휴·보강, 수업일수 준수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휴·보강 및 수업일수 준수 등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음
- 학생들의 강의평가 항목에 수업의 성실성을 적시하여 교·강사들의 수업기간 준수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3.1.3 학생선발

대학은 학생의 입학자격 등에 관하여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 하는 입학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이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며, 모든 모집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평가하고 있다. 또한 학생모집에 있어 신체적·정신적·인종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

3.1.3.(1) 대학은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개인의 신체나 신념, 인종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학생 선발정책을 수립하여 공지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 정책을 위해 매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 학생 선발의 전 과정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 대학은 학생선발과 관련해서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이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도록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3.1.3.(2) 대학은 입학전형기준에 맞추어 학생 모집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입학전형기준에 맞춰 학생 모집과정의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과 지침에 따라 학생선발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동일인을 위촉하지 않음.

3.1.3.(3) 대학은 적정 수준 이상의 신입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2016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100%이며 인증원의 평가기준을 충족함.

3.1.3.(4) 대학은 매년 학생선발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성과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학생 모집 전형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전체 구성원에게 공유하여 부서 및 학과의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3.1.4 학업 성취도 평가

대학은 산업체 요구수준과 학위 수준에 부합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성취도평가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여 모든 과정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한다. 또한 성취도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교육의 질과 수준을 보장한다.

3.1.4.(1) 대학의 성적평가는 대내외적으로 평가의 신뢰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A학점 분포비율은 24.6%이며 인증원이 제시한 기준값 40.0% 이하를 충족함.

3.1.4.(2) 대학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적평가, 학점 부여 관련 규정을 갖추어 준수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성적분포 및 학점부여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학칙에 졸업 충족 요건을 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3.1.4.(3)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제시된 성취수준과 내용, 평가기준, 방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 강의계획서를 통하여 강좌, 프로그램, 학위과정 등에서 학생이 달성해야 할 학습목표와 성취수준을 적절히 공지하고 있음.
- 성취도 평가체제는 학칙 및 규정, 지침에 의거하여 학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3.1.4.(4) 대학은 학생에게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이의 제기 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성적평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학생이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3.2 교육성과

3.2.1 졸업생 취업률

대학은 적정 수준 이상의 졸업생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성과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3.2.1.(1) 대학은 적정 수준 이상의 졸업생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취업률은 예체능계 51.7%, 예체능계 제외 63.7%이며 인증원이 제시한 예체능계 취업률 46% 이상, 예체능계를 제외한 기타계열 취업률 62% 이상의 평가기준을 충족함.

3.2.1.(2) 대학은 적정 수준 이상의 졸업생 취업률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취업률 향상 및 유지를 위해 지원 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취업지원센터 및 학과에서 졸업생 취업률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2.2 교육만족도

대학은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및 서비스 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의 교육만족도를 평가하고,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2.2.(1)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교육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매년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서 및 학과의 사업계획에 반영함.
- 교육만족도 조사방법과 평가내용의 객관성, 합리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

3.2.2.(2) 교육 만족도 조사 방법 및 평가 내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타당한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교육 만족도 조사의 합리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년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학환경, 교육과정, 학생역량, 서비스, 학사운영, 발전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3.2.2.(3) 만족도조사 결과는 경영진의 검토를 거쳐 교육만족도 개선에 활용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후 경영진의 검토를 거쳐 부서 및 학과에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음.

3.2.3 재학생 충원율

대학은 적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충원율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3.2.3.(1) 대학은 적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91.8%이며 인증원이 제시한 82.0%의 평가기준을 충족함

3.2.3.(2) 대학은 학생의 재학생 충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만족도조사 결과 중도탈락 사유 등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있어서 소속감, 연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과 및 부서의 상호 협조 체제를 마련함.
- 지도교수, 학과장과의 상담을 통해 학생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 공유하며 심층상담을 통해 중도탈락을 예방함.
- 대학은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전과제도, 필드 트립, WITH YOU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3 교수학습 지원

3.3.1 교수학습지원 체제

대학은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 및 교수의 교수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수·학습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학생 학습능력 제고 및 교수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충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3.3.1.(1) 대학은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및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교수·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교수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지원, 학습지원 사업의 심의와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전산지원센터의 컴퓨터 실습실을 지원하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어학강좌 지원하는 등 타부서와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3.3.1.(2)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 및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수 및 학생의 교수·학습 향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매년 수요자(교수, 학생) 의견을 반영한 교수학습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회의록, 운영계획서, 프로그램별 결과보고서를 통해 시행 여부를 확인함.
- 대학은 교원의 교육 및 연수, 학습지원, 미디어지원 개발 및 운영, 수업환경 지원 등 교수학습 향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함.

3.3.2 교수학습 지원활동 평가 및 개선

대학은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 및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 활동 및 강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학생 및 교수의 교수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및 환경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개선하고 있다.

3.3.2.(1)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강좌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교수강의평가규정에 의거하여 매학기 전과목에 대해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3.3.2.(2) 대학은 강의평가 결과를 교육의 질 및 교수의 강의능력 제고에 활용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수업의 질 보장을 위해 강의평가 결과를 비전임교원(강사) 추천 및 해촉에 활용하고, 강의평가 결과가 저조한 교수는 교수법 강의를 수강하도록 함. 또한 교수법, 컴퓨터활용능력, 강의 컨설팅 등 다양한 교수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모든 교·강사는 강의평가결과를 수렴하여 교과목별로 다음 학기 강의평가 개선사항을 작성하여 반영함.

3.3.2.(3) 대학은 대학의 교수학습지원 활동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교수학습지원 계획 시행에 대한 효과성 확보를 위해 학생 및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조사, 자격증 취득 현황 등 연간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년도 교수학습지원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음.

기준 4 : 산학협력

4.1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산학협력활동 지원 체제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과 현장중심 교육 운영을 위하여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활동을 발굴·전개하며, 이를 위하여 학내·외에 산학협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연간 산학협력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4.1.1.(1)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을 갖추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전문 직업 인재 양성이라는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대학은 산학협력단 관련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교수의 산학협력 활동 업적평가 반영, 산학협력 활동 경비 지급, 산학협력 중점교원 운영, 학생의 현장교육 등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대학은 산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현장실습 운영, NCS기반 현장중심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수들의 외부 전문가활동 지원, 산업체 및 외부연구사업 수행, 지자체교육사업 운영, 유아동 전문가 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4.1.1.(2) 대학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산업체, 지자체, 학과별 교류 단체·협회, 자문기관 등과 지속적 산학연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외 산학협력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산학협력 지원 관련 규정과 지침을 보유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전담직원을 확보하고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4.1.1.(3) 대학은 대학의 산학협력활성화 정책에 부합하는 연간 산학협력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연간 산학협력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4.1.2 산학협력활동 평가 및 개선

대학은 학교기업, 기술개발, 교육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실무능력 향상과 지역산업 및 사회에 공헌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고 있다.

4.1.2.(1) 대학은 연간 산학협력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의 실무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학은 연간 산학협력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음.

4.2 취·창업 지원 활동

4.2.1 취·창업지원체제

대학은 학생의 취·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취·창업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4.2.1.(1) 대학은 학생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취·창업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취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원체제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학생의 취·창업 활동을 지원함.

4.2.1.(2) 대학은 대학의 취·창업지원 활동에 대하여 충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취업관리 체계화와 학생스펙 관리 및 창업활동 촉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음.

4.2.2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계획과 평가

대학은 학생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산업환경 변화와 학생 요구를 분석하고 반영한 취·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며, 계획 및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취·창업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4.2.2.(1) 대학은 산업변화 및 학생 요구를 반영하여 연간 학생 취·창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가?

■ 평가결과

- 학생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산업계의 트렌드와 산업체 및 학생 요구도를 반영한 연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4.2.2.(2) 대학은 취·창업지원 계획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계획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취업지도위원회,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학과(전공)와 연계하여 진행함.
- 대학은 평가 시스템에 근거하여 매년 학과(전공) 및 취·창업 지원부서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이력서 클리닉, 창업 및 전공 관련 특강, 인성 함양 특강,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차년도 사업에 반영함.

4.3 현장실습

4.3.1 현장실습교육 지원체제

대학은 학생의 현장적응력 및 직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현장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전담지원체제를 갖추고 현장실습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충분한 현장실습 교류업체를 확보한다.

4.3.1.(1) 현장실습 교류업체당 재학생 수는 적절한가?

▣ 평가결과

- 대학의 현장실습 교류업체당 재학생 수는 인증원이 제시한 13명 이하 평가기준을 충족함.

4.3.1.(2) 현장실습은 정해진 규정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관리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목표가 수립되어 있고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순회지도 보고서, 현장실습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4.3.1.(3) 현장실습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전담지원 체계를 갖추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과별 학생 현장실습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전담지원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현장실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음.

4.3.1.(4) 학과의 현장실습 계획은 학과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과(전공)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희망직무와 교통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습업체를 배정함.

4.3.2 현장실습교육 평가 및 개선

대학은 현장실습교육 운영 성과에 대하여 학생 및 실습산업체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4.3.2.(1) 대학은 현장실습교육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 및 실습 산업체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학생과 산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각 과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차년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음.

4.3.2.(2) 대학은 대학의 현장실습 지원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매년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실습 지원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음.

4.3.2.(3) 각 학과는 학과에서 시행한 현장실습 프로그램별 운영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 개선에 활용하는가?

▣ 평가결과

- 각 학과별로 시행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현장실습 교육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기준 5 : 학생 및 도서관

5.1 학생지원 및 상담

5.1.1 학생지원 체제 및 안전관리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자질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학생지원 조직은 학생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생의 요구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계획 이행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

5.1.1.(1) 대학은 학생지원조직을 갖추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연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발전계획에 기반 한 연간 학생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음.

5.1.1.(2) 대학은 학생지원 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생지원활동을 평가 개선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매년 자체평가와 만족도 조사 외에도 복지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생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5.1.1.(3) 대학은 학생 행사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으며 준수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각종 학생 행사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규정과 매뉴얼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음.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5.1.2 학생자치 활동

대학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대학 및 학생회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 자치활동에는 학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활동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5.1.2.(1)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생의 자치활동(학생회, 동아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정이나 지침을 갖추어 준수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관련 정책과 규정에 근거하여 총학생회와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학회 등의 구성을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음.
- 민주적 선출을 통해 구성된 대학의 학생자치단체는 총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학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함.

5.1.2.(2) 대학은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물적으로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대학의 지원 책무에 따라 총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학회 등 학생 자치지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물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5.1.3 언론활동의 보장

대학은 학생 언론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며, 언론활동 지원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5.1.3.(1) 학생의 언론활동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언론활동을 보장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생의 언론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활동에 대한 정책과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속기관으로 신문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음.
- 신문방송국의 언론 활동 보장을 위하여 독립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송활동을 위한 각종 방송장비로 교내 방송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5.1.3.(2) 대학은 학생의 언론활동을 보장·장려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절히 하고 있으며 평가·개선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신문방송국의 운영비, 교육비, 홍보비 등의 재정지원과 시설 및 공간 지원을 하고 있음.
- 신문방송국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기자교육 연수, 리더십 트레이닝)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대학은 신문방송국 국장과 운영위원, 간사, 편집장, 각 부장들이 참석하는 평가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차년도 신문방송국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5.1.4 상담 및 대학생활 정보 제공

대학은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과 성공적인 대학생활, 그리고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설계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위취득·진로설계·경력개발·학업활동은 물론 대학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언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5.1.4.(1) 대학은 학생의 성공적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 및 진로지도 체제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생의 학위취득, 진로설계, 경력개발, 학업활동은 물론 학생들의 심리·생활 상담을 위해 SIENA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교수 상담 후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생상담실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5.1.4.(2) 대학은 자격을 갖춘 상담 인력과 상담체제를 갖추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생상담실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전문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하여 학생의 심리, 생활, 진로, 학습 상담 등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고 있음.

5.1.4.(3) 대학은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생 상담활동 활성화 및 정보제공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 시스템에 기초하여 매년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와 함께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음.

5.2 학생복지 지원

5.2.1 복지 지원

대학은 학생의 학습동기를 촉진하고 학생의 건강과 안정된 대학생활 및 학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복지 및 장학지원정책을 개발하여 운영하며,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자격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5.2.1.(1) 대학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생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전담 지원조직을 중심으로 매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시행하고 있음.

5.2.1.(2) 대학은 구성원의 건강한 대학 생활을 위하여 보건실에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보건실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현장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5.2.1.(3) 대학은 학생의 대학생활 및 학습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생들의 대학생활 및 학습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장학금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5.2.1.(4) 등록금 대비 장학금비율은 적정한가?

■ 평가결과

- 대학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비율은 18.9%이며 인증원이 제시한 기준값 10% 이상 평가 기준을 충족함.

5.2.2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대학은 장애학생이나 다문화가족 학생(외국인학생 포함)들이 대학의 복지 및 장학정책에서 차별을 받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학생이나 다문화가족 학생(외국인학생 포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2.2.(1) 대학은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외국인 학생 포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장애학생 및 다문화 가족 학생의 대학생활과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과 제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5.2.2.(2) 대학은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외국인 학생 포함)의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장애학생도우미 지원, 간담회 실시,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 등을 시행하였으며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음.

5.3 도서관

5.3.1 도서관 지원 체제

대학은 대학 구성원에게 원활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5.3.1.(1) 도서관은 대학 구성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준사서 이상,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을 대학 규모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학술정보센터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규정과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서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준 사서 이상, 도서관법 시행령 제 4조 제2항)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5.3.1.(2) 대학은 도서관의 안정된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25.5천원이며 인증원이 제시한 기준값 21.6천원 이상을 충족함

5.3.1.(3) 대학은 매년 이용자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도서관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학술정보센터는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연차별 학술정보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는 매년 사업결과보고서 교비회계결산서에 공개함.

5.3.2 도서관 지원 평가 및 개선

도서관은 도서관의 안정된 운영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하며, 구성원들에게 도서정보자원 확보 및 이용을 안내한다. 또한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의 질, 접근성, 활용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5.3.2.(1) 도서관은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을 갖추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시설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학술정보센터는 학술정보센터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와 개선에 관한 지침을 갖추고 정보자원 서비스의 질, 접근성, 활용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5.3.2.(2) 도서관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학술정보센터는 정보자원 서비스 평가를 위해 매년 요구도 조사 및 재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분석 결과를 차년도 사업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음.
- 학술정보센터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술정보센터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학술정보센터 자료, 시설의 원활한 이용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준 6 : 교원

6.1 교원의 선발과 평가

6.1.1 교원 임면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은 교원의 채용, 재임용, 승진, 해임 등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한다.

6.1.1.(1) 대학은 전임교원의 채용, 재임용, 승진, 해임 등의 임면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규정이나 지침을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교원의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해임 등의 임면 시행에 관한 인사규정 및 지침을 갖추고 있으며 신규채용심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의, 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법적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음.
- 교원의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해임 등의 임면 시행에 관한 인사규정 전반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6.1.1.(2) 전임교원 신규 채용시 학문적, 실무적 자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외부심사위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신규교원 채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문적, 실무적 자질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에 학력, 연구실적, 교육 및 연구경력, 산업체 경력, 기타 전공분야 자격 등을 반영하고 있음.

6.1.1.(3) 교원인사위원회와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와 정년보장심사위원회 위원을 보직, 직급, 계열, 성별 등을 적절히 안배하여 운영하고 있음.

6.1.2 교원의 확보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은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한 학문적·실무적 자질을 갖춘 적정한 수의 교원을 채용하고 적절하게 배치한다.

6.1.2.(1) 대학은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한 학문적, 실무적 자질을 갖춘 전임교원을 적정수준 이상 확보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전임교원확보율은 54.4%이며 인증원이 제시한 기준값 50.0% 이상을 충족함

6.1.3 교원평가

대학은 교육의 효과성을 비롯한 교원의 다양한 책무 이행(직업교육 활동: 현장실습지도, 기술지도, 기술개발, 취업지도, 산학협력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교원의 자질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교원평가를 수행한다.

6.1.3.(1) 대학은 합리적인 교원평가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갖추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원평가를 위해 교수업적평가규정과 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대상에 따라 전임교원, 강의전담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으로 구분하여 업적평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6.1.3.(2) 교원평가 시 직업교육 관련 활동(실습지도, 취업지도, 기술개발, 산학협력 등)이 반영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교수업적평가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산학영역, 봉사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정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전문대학 교육의 목표인 전문직업인 양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수업적평가 시 취업실적, 취업률 향상도, 산학협동위원회, 산업체협정체결, 연수실적, 추수지도 등 다양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6.1.4 비전임 교원의 적합성

강사를 비롯한 비전임 교원은 담당교과와 관련된 학위를 소지하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6.1.4.(1) 강사를 비롯한 비전임 교원의 채용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담당교과와 학위 또는 실무 경력과의 관련성에 관한 평가 기준이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시간강사, 겸임교수, 특임교수, 대우교수, 초빙교수, 명예교수 등에 관한 규정과 임용위촉에 관한 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비전임교원의 임용자격, 학위, 실무경력에 관한 사항과 기준을 정하여 담당교과목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6.1.4.(2) 강사를 비롯한 비전임 교원의 채용 규정이나 지침을 갖추어 준수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시간강사, 겸임교수, 특임교수, 대우교수, 초빙교수, 명예교수 등 비전임 교원의 채용 규정과 지침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진행함.

6.2 교원의 활동

6.2.1 교원 역량 계발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원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해 연구년(연구학기), 산업체 연수학기, 교환교수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2.1.(1) 대학은 16주 이상의 연구년(연구학기)이나 산업체 연수학기 또는 교환교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교원 역량계발 관련규정이나 지침을 갖추어 운영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교원의 역량 계발을 위해 교수연구년제 및 산업체연수, 교직원 해외연수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매학기 교원의 산업체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6.2.1.(2) 대학은 교원의 역량 계발을 위하여 전공교육, 직업교육 관련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매학기 관련 규정 및 지침 근거에 의해 교원산업체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임교원 전공교육, 직업교육 역량계발을 위한 개별 단기연수 지원 및 단체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6.2.2 교육활동

교원은 적절한 수업시간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원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육 외에 연구, 학생지도, 산학협력 등 다양한 활동과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산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원의 교육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학은 교원에게 적절한 수업시간을 배정함으로써 수업 준비에 필요한 연구와 학업지도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6.2.2.(1)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적절한가?

▣ 평가결과

- 대학의 교원 주당 평균시수는 12.4이며 인증원이 제시한 12.8시간을 충족함

6.2.2.(2)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음.

6.2.3 연구

대학은 전공분야별 교육 및 연구, 창작 및 기술 개발 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속적 학습 및 연구 활동을 장려한다. 또한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술개발·창작 등의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결과를 활용 한다.

6.2.3.(1) 교원의 연구실적은 적절한가?

▣ 평가결과

-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 실적은 0.5편이며 인증원이 제시한 기준값 0.2편을 충족함

6.2.3.(2) 대학은 연구(창작 및 기술개발 포함) 촉진을 위한 시간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된 규정이나 지침을 보유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교원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시간적·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연구개발 수행성과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수업적평가규정, 학술연구 활동 지원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시간적·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연구개발 수행성과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지원을 제도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6.2.3.(3) 연구개발 지원 실적과 연구개발 수행성과에 대한 보상 실적이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교원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원업적평가규정, 학술연구비운영 규정, 학술활동보조금지급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수행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기준 7 : 경영 및 재정

7.1 리더십과 행정관리

7.1.1 대학의 조직과 운영

대학은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정관, 학칙, 규정 등에 총장 및 보직자, 교수, 직원 등의 권한, 책임범위, 역할분담, 전결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이를 준수한다.

7.1.1(1) 대학은 필요한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규정(정관, 학칙, 지침 등) 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사명과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총장, 보직자, 교수, 직원, 학생 등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권한체계, 책임범위, 역할분담을 규정한 정관과 학칙, 지침을 갖추고 운영함.

7.1.1(2) 대학은 모든 문서와 기록(전산정보자료 포함)의 생성과 식별, 열람, 보관 등을 위한 규정을 갖추어 준수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전산정보자료가 포함된 모든 문서와 기록의 생성, 식별, 열람, 보관 등을 위한 규정을 갖추어 관리하고 있음.

7.1.1(3) 제 규정의 신설 및 변경, 폐지 등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제 규정의 신설 및 변경, 폐지와 관련 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법령과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7.1.2 총장의 리더십

대학의 총장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운영 및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이 비전과 정책을 구성원과 공유하고 실현시킴으로써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7.1.2(1) 총장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사명과 비전,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학 운영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사명과 비전, 교육목표의 성공적인 달성과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운영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함.

7.1.2(2) 총장이 제시한 계획과 비전은 구성원들에게 공표, 공유되어 전 조직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총장이 제시한 특성화 및 대학발전계획, 비전, 교육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학교행사, 회의, 연수, 설문조사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공포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교내외 각종 홍보물, 학생수첩, 공문서 양식 등을 통해 공유함.

7.1.3 의사결정구조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은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며,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7.1.3(1) 대학은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와 규정을 갖추어 준수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총장은 대학행정의 주요사항에 대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들을 해당 부서에서 추천받아 자문·심의 등의 과정을 사전에 거치도록 함으로써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음.

7.1.3(2) 대학은 다양한 형태의 상시적인 의견수렴 제도를 통해 교직원의 의견을 주요 정책결정에 반영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각종 회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등 상시적인 의견수렴 제도를 통해 교직원 의 의견을 주요 정책결정에 반영함.
- 각종 위원회 통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교무회의에서 심의 된 사항을 전체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7.2 인사 및 복지

7.2.1 직원 인사관리

대학은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직원 확보, 업무분장, 인사평가 및 보상, 해임 등의 규정을 갖추어 준수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개선한다.

7.2.1(1) 대학은 대학의 규모와 업무량에 적절한 직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직원 1인당 재학생 수는 대학정보공시 기준 45명으로 대학의 규모와 업무량에 적절한 직원을 확보하고 있음.

7.2.1(2) 대학은 직원의 채용, 업무분장, 인사평가 및 보상, 해임 등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직원복무규정, 업적평가규정, 인사규정, 계약직원임용규정, 교직원 표창규정,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해외연수규정, 인사위원회규정 등의 각종 규정을 갖추고 직원의 채용, 업무분장, 인사평가 및 보상, 해임 등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7.2.2 교원 및 직원의 처우 및 복지

대학은 교원 및 직원에게 적절한 급여 및 복지를 제공하고, 직무역량 계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갖추어 준수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다.

7.2.2(1) 교원의 급여 수준은 적절한가?

■ 평가결과

- 등록금 대비 교직원 인건비 비율은 47.3%이며 교원의 개인별 연봉 현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

7.2.2(2) 직원의 급여는 적절한가?

■ 평가결과

- 등록금 대비 교직원 인건비 비율은 47.3%이며 직원의 개인별 연봉 현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

7.2.2(3) 대학은 직원의 직무역량 계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직원들의 직무역량 계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갖추고 다양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음.

7.2.2(4) 대학은 교원 및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교원 및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과 지침을 갖추고 있으며 휴직제, 교직원체육행사, 자녀학비보조수당, 석식비 지원, 경조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7.3 재정계획과 운영관리

7.3.1 장단기 재정운영계획

대학은 재원의 효율적 확보와 운영을 위한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정운영계획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7.3.1(1)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장·단기 재정운영계획(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의 관련 비용 포함)을 수립하여 실행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발전계획의 전략방향, 핵심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함.
- 대학은 등록금 이외의 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기금조성및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정부부처 및 교외 연구기관의 연구비 지원수입,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입시전형료 수입, 증명사용료 수입, 예금이자 수입, 평생교육원 수입, 산학협력 수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7.3.1(2)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관련 제세공과금, 법정부담경비, 학교법인운영비부담액 제외)의 80% 이상이 대학운영경비에 전입되고 있는가? (수익용기본재산으로부터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만 평가함)

■ 평가결과

- 학교법인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족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재산현황이 토지(임야)로 그 수익금은 미흡하여 법인의 기본운영비 충당분을 제외하면 설치학교로 전출할 금액이 부족함.
- 교육부의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과 관련하여 본 학교법인에서도 학교 부담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음.

7.3.2 연간 예산계획 수립 및 결산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연간 예산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며, 이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홈페이지,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시하며, 구성원들에게도 충분히 알려야 한다. 또한 예산수립과 집행·결산은 부서를 분리하여 관리하며, 결산결과 역시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공시하고, 결산결과를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운영계획을 검토하여 등록금을 산정한다.

7.3.2(1) 연간 예산계획은 대학의 장단기발전계획 및 장단기재정운영계획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립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발전계획의 전략방향,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예산편성, 대학운영계획, 장·단기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함.

7.3.2(2) 연간 예산계획 수립 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비전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대학은 부서와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외부위원이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대학평의회 자문, 이사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7.3.2(3) 연간 예산 수립 및 변경, 결산, 공시 등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 관련법규를 따르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예산 수립 후 사립학교법 시행령 14조 4항에 의거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함.
- 예산계획의 변경 절차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특례규칙에 따라 대학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하고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심의 확정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표함.

7.3.2(4) 대학은 등록금 산정 시, 관련 법규(고등교육법 11조)와 이월금 및 적립금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책정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최근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검토 후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산정함.
- 대학 등록금은 법령과 규정에 따라 교수, 학생,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러 개의 등록금 책정(안) 중 1개를 최종 심의하여 결정함.

7.3.2(5) 예산 수립과 집행, 결산은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 11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 운영하고,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7.3.3 재정자원의 다양성

대학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자원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7.3.3(1) 대학이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대학기금조성및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등록금 수입 이외에 평생교육원 운영수입, 정원의 전형, 정부부처 및 교외 연구기관의 연구비 지원수입,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 입시전형료수입, 증명사용료 수입, 예금이자 수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7.3.3(2) 기부금, 발전기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 법정부담금 등 법인 전입금이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유지 및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 전입금 및 다양한 기부금이 조성되어 있음.

7.4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7.4.1 교육비의 환원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재정운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비 환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환원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7.4.1(1) 교육비 환원율이 적정한가?

■ 평가결과

- 대학의 교육비환원율은 105.8%이며 인증원이 제시한 기준값 100% 이상을 충족함

7.4.2 재정운영의 적절성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한 교육환경에서 구성원들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또한 대학은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한다.

7.4.2(1) 예산집행은 예산계획에 맞추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교육목표의 실현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 대학재정을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 제20조(성립 전 예산의 집행금지)와 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3항과 4항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7.4.2(2) 대학은 적립금과 이월금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사립학교법 제33조 2항에 따른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직전연도 교비회계의 이월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적절하게 이기되고 있음.
-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직전연도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이 구분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고 있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전연도 결산 이월금에 대한 잉여금을 처리하고 있음.
- 또한 직전연도 결산잉여금은 처리원칙에 맞게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7.4.2(3) 대학 이월금액의 발생 사유가 타당하고 활용계획은 적절한가?(이월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 평가결과

- 대학은 이월금의 증감사유와 활용계획을 타당성 있게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법령을 준수하여 이월금을 처리하고 있음.

7.4.2(4) 대학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교육목표 실현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체계를 갖추고 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대학은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 자문 결과 및 회계감사결과를 토대로 당해 연도 추경예산 및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함.

7.4.3 감사제도

대학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재정에 대한 감사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한다.

7.4.3(1) 대학은 연간 재정운영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감사제도는 사립학교법 제19조(임원의 직무)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감사)에 의해 법인의 감사가 당해 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19조(임원의 직무) 제4항에 규정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함.
- 대학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독립된 외부전문 회계법인으로부터 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감사 시기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업무에 관하여 실시하고 감사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음.

7.4.3(2) 대학은 감사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감사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와 감사증명서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기준 8 : 물적 · 기술적 자문

8.1 물적자원 계획과 평가

8.1.1 물적자원 계획

대학은 교육 및 복지시설과 기자재, 전산정보지원시스템 등을 포함한 물적자원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배정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물적자원 예산확보 및 배정 계획은 교육 및 학습여건 개선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교직원, 학생 등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8.1.1.(1) 대학은 사명과 교육목표,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물적자원(교육 및 복지시설, 기자재, 산정보지원시스템 등)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교육 및 복지시설, 기자재, 전산정보지원시스템 등의 물적자원 확보와 유지를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장·단기 물적자원 확보 및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연간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8.1.1.(2) 물적자원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배정 계획은 대학의 특성화 및 장·단기발전계획과 연계되어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의 3개년 물적자원 확보와 배정계획서는 대학의 특성화 및 장·단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

8.1.1.(3) 물적자원의 예산확보 및 배정계획 수립 시 교육 및 학습여건 개선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물적자원의 확보 및 배정계획 수립 시 학생만족도, 학과와 부서 의견 조사 후 해당 위원회에서 결과를 반영하여 실행하고 있음.

8.1.2 물적자원 평가 및 개선

대학은 물적자원 확보 및 지원계획, 그리고 계획 실행에 대한 효과성을 정해진 지침이나 규정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8.1.2.(1) 대학은 물적자원 확보와 지원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을 갖추어 주기적으로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물적자원의 확보와 지원계획 및 시행에 대해 평가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소관 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물적자원 확보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8.2 교육 및 지원시설

8.2.1 교육 및 복지시설의 확보 및 유지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 교수,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학습·연구·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제공하며, 장애학생을 포함하여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대학의 모든 교육 및 복지시설들을 구성원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유지·개선하기 위한 규정이나 지침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8.2.1.(1) 교사확보율은 충분한가?

■ 평가결과

- 대학의 교사확보율은 168.8%이며 인증원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100% 이상을 충족함

8.2.1.(2)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 및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시설(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 및 학생의 학습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관, 복지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성실한 유지관리를 통해 구성원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8.2.1.(3) 대학은 구성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실 및 상담실을 갖추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구성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본관에 보건실과 상담실을 갖추고 있으며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8.2.1.(4)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적절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장애학생이 교육 및 복지시설 등 대학의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대학은 장애학생 명단을 구비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이 대학의 모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센터규정을 두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8.2.1.(5) 대학은 교육 및 복지시설의 관리, 유지, 개선을 위한 규정이나 지침을 갖추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교육 및 복지시설의 관리, 유지, 개선을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8.2.2 정보전산시스템 지원 및 운영

대학은 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정된 운영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며, 정해진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해당 시스템과 서비스의 질, 접근성, 활용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8.2.2.(1) 대학은 정보전산시스템 지원조직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운영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구성원에게 원활한 정보전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산지원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적절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8.2.2.(2) 대학은 매년 구성원(교직원,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정보전산시스템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가?

▣ 평가결과

- 전산지원센터는 장단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연간 사업운영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전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8.2.2.(3) 정보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전산지원센터는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전산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8.2.3 정보보안 체계

대학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개인정보, 학사정보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보호·제공할 수 있는 정보전산기술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 진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8.2.3.(1) 대학은 학생 및 교원, 직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갖추어 준수하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생 및 교원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령에 근거한 규정 및 내부관리계획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8.2.3.(2) 대학은 학사관련 정보를 화재, 외부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의 정보보호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사관련 정보를 화재, 외부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하고 별도의 공간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등의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음.

8.2.3.(3) 대학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진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수준진단 정책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수준진단과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8.3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

8.3.1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

대학은 교육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 등이 교육과정 운영에 맞추어 필요한 때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실험실습 기자재와 재료의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규정화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기자재 및 재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 운영한다.

8.3.1.(1) 실험실습비(산단회계 포함) 지원은 적절한가?

■ 평가결과

- 대학의 학생1인당 실험실습비는 172.5천원이며 인증원이 제시한 157천원을 달성하여 충족함

8.3.1.(2) 대학은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신청과 지원 절차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합리적 지원을 위해 실험실습기자재운영규정, 실험실습기자재운영위원회규정을 보유하여 시행하고 있음.

8.3.1.(3)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과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질적·양적으로 충분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실험실습기자재와 관련하여 전공별로 충분한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교육환경 개선과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8.3.2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관리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를 교수·학습에 상시 활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8.3.2.(1) 대학은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관리·유지·개선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의 관리·유지·개선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음.

8.3.2.(2)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는 교수·학습에 상시 활용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관리(유지, 보수, 개선 등) 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의 관리·유지·개선과 폐기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보수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에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기준 9 :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9.1 대학의 책무

9.1.1 대학의 윤리적 책무

대학은 구성원들의 윤리적 책무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윤리규정을 제정·공표·시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인다.

9.1.1 (1) 대학은 총장을 비롯한 구성원의 윤리적 책무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대학 구성원으로서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 윤리적 책무의 실천을 위해 학생, 교직원이 함께 교직원윤리강령, 학생실천강령, 김영란법 준수를 선서함.
- 대학은 '학생상벌에관한시행세칙'을 제정하여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학생규범을 제시하고, 대학의 건전한 성윤리 강화를 위하여 성희롱및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을 갖추고 매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9.1.1 (2) 대학은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정보공시 위반, 연구비 집행규정 위반,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부당한 징계 등)

■ 평가결과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60조에서 제62조까지의 내용과 관련한 위반사례가 없으며, 학내의 주요 사안들을 각종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자문함으로써 투명하게 결정함.
- 대학은 교원 재임용과 관련하여 2건의 재임용 탈락 사례가 있으나 소청 및 행정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 1학기에 모두 복직처리 예정임.

9.1.2 대학의 사회적 책무

대학은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대학이 지닌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인식시키고, 대학 특성에 맞춘 사회봉사 정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교육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적절히 수행한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봉사정신 함양에도 기여한다.

9.1.2 (1) 대학은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봉사 정책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사회봉사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송의사회 봉사 연간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개인의 재능과 소양을 활용한 사회봉사 활동을 내실화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기반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시행함.

9.1.2 (2) 대학은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에 필요한 인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학생의 봉사활동을 권면하기 위해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봉사』 교육과정을 학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업적평가에 사회봉사 실적을 반영하고 있음.
- 교육부 자유학기제 시행 정책에 부응하여 서울시 산하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 활동을 지원함.
-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실적으로 2012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교육기부기관 지정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9.2 교육품질의 지속적 개선

9.2.1. 교육품질의 평가 체계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교육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의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실천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체제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9.2.1 (1) 대학은 교육품질의 평가·개선을 위한 조직 및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처를 평가전담부서로 두고 전체 구성원이 대학 발전계획 핵심지표를 공유하고 교육품을 관리하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

9.2.1 (2) 대학은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대학의 모든 교육활동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정책이나 규정 또는 지침을 갖추고 시행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자체평가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정보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자체평가 결과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후 차년도 대학운영계획에 반영함.

9.2.1 (3)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체제는 기관평가인증 영역을 포함하여 교육목표, 특성화 및 장단기발전계획, 외부 평가 등과 관련된 학내외의 다양한 평가지표들을 유기적이고 통일성 있게 연계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교육목표 달성, 교육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대외평가(특성화사업,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학이 달성해야할 주요 정책 지표를 적절히 구성하여 평가함.

9.2.1 (4) 대학은 교육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평가체제의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대학발전계획에 근거하여 핵심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를 대학 자체평가 지표 값으로 설정함.
- 자체적으로 대외 평가시스템(BI 솔루션)을 구축하여 주요 경쟁력 지표값을 주기적으로 분석, 평가, 관리하면서 교육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9.2.2. 교육품질의 평가 및 개선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교육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품질 평가 및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교육품질의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9.2.2 (1)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품질의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 정보공시에 공시하고 있음.

9.2.2 (2) 자체평가결과는 대내외적으로 공개되고 전 구성원에게 공유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자체평가 결과를 각 부서 및 학과에 보고서 형태로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공유하여 전체 구성원과 함께 교육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9.2.2 (3) 자체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경영진이 검토하고, 전 부서에서 구체적인 개선계획 및 실행을 통해 개선하고 있는가?

■ 평가결과

- 대학은 매년 대학자체평가 결과와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검토된 개선계획을 부서 및 학과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6 자체평가 종합결과표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가결과
1.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1.1 사명과 교육목표	1.1.1 대학의 사명	정성	Y
		1.1.2 대학의 교육목표	정성	Y
	1.2 특성화 및 발전계획	1.2.1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수립	정성	Y
		1.2.2 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평가	정성	Y
2. 교육	2.1 교육과정	2.1.1 교육과정 정책	정성	Y
		2.1.2 교육과정 개발	정성	Y
	2.2 전공 및 교양 교육	2.2.1 현장중심 전공교육	정성/정량	Y
		2.2.2 직업기초 교양 및 기초학습 교육	정성	Y
	2.3 평생교육	2.3.1 평생교육 운영 체제	정성	Y
		2.3.2 학점인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리	정성	Y
3. 학사관리 및 교육성과	3.1 학사관리	3.1.1 학사관리 규정 및 준수	정성	Y
		3.1.2 수업관리	정성	Y
		3.1.3 학생선발	정성/정량	Y
		3.1.4 학업 성취도 평가	정성/정량	Y
	3.2 교육성과	3.2.1 졸업생 취업률	정성/정량	Y
		3.2.2 교육만족도	정성/정량	Y
		3.2.3 재학생 충원률	정량	Y
	3.3 교수학습 지원	3.3.1 교수학습 지원 체제	정성	Y
3.3.2 교수학습 지원활동 평가 및 개선		정성	Y	
4. 산학협력	4.1 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산학협력활동 지원체제	정성	Y
		4.1.2 산학협력활동 평가 및 개선	정성	Y
	4.2 취창업지원 활동	4.2.1 취창업지원체제	정성	Y
		4.2.2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계획과 평가	정성	Y
	4.3 현장실습	4.3.1 현장실습교육 지원체제	정성/정량	Y
		4.3.2 현장실습교육 평가 및 개선	정성	Y
5. 학생 및 도서관	5.1 학생지원 및 상담	5.1.1 학생지원 체제 및 안전관리	정성	Y
		5.1.2 학생자치활동	정성	Y
		5.1.3 언론활동의 보장	정성	Y
		5.1.4 상담 및 대학생활 정보 제공	정성	Y
	5.2 학생복지 지원	5.2.1 복지 지원	정성/정량	Y
		5.2.2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 지원	정량	Y
	5.3 도서관	5.3.1 도서관 지원 체제	정성/정량	Y
		5.3.2 도서관 지원 평가 및 개선	정량	Y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가결과
6. 교원	6.1 교원의 선발과 평가	6.1.1 교원 임면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성	Y
		6.1.2 교원의 확보	정량	Y
		6.1.3 교원평가	정성	Y
		6.1.4 비전임 교원의 적합성	정성	Y
	6.2 교원의 활동	6.2.1 교원 역량 계발	정성	Y
		6.2.2 교육활동	정성/정량	Y
6.2.3 연구		정성/정량	Y	
7. 경영 및 재정	7.1 리더십과 행정관리	7.1.1 대학의 조직과 운영	정성	Y
		7.1.2 총장의 리더십	정성	Y
		7.1.3 의사결정구조	정성	Y
	7.2 인사 및 복지	7.2.1 직원 인사관리	정성/정량	Y
		7.2.2 교원 및 직원의 처우 및 복지	정성/정량	Y
	7.3 재정계획과 운영관리	7.3.1 장단기 재정운영계획	정성	Y
		7.3.2 연간 예산계획 수립 및 결산	정성	Y
		7.3.3 재정자원의 다양성	정성	Y
	7.4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7.4.1 교육비의 환원	정량	Y
		7.4.2 재정운영의 적절성	정성	Y
7.4.3 감사제도		정성	Y	
8. 물적·기술적 자원	8.1 물적자원 계획과 평가	8.1.1 물적자원 계획	정성	Y
		8.1.2 물적자원 평가 및 개선	정성	Y
	8.2 교육 및 지원시설	8.2.1 교육 및 복지시설의 확보 및 유지	정성/정량	Y
		8.2.2 정보전산시스템 지원 및 운영	정성	Y
		8.2.3 정보보안 체계	정성	Y
	8.3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	8.3.1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지원	정성/정량	Y
8.3.2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관리		정성	Y	
9.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9.1 대학의 책무	9.1.1 대학의 윤리적 책무	정성	Y
		9.1.2 대학의 사회적 책무	정성	Y
	9.2 교육품질의 지속적 개선	9.2.1 교육품질의 평가체제	정성	Y
		9.2.2 교육품질의 평가 및 개선	정성	Y